의안번호	2203287
의 뢰 인	임미애의원
회 답 일	2024. 8. 28.
추계번호	24C3127

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Ⅰ. 비용추계 결과

❑ 개정안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에 필요한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633억 3,300만원, 2030년 652억 4,9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3,216억 8,100만원(연평균 643억 3,6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양육비 선지급 신청 등(안 제21조의6)	63,333	63,881	64,382	64,836	65,249	321,681	64,336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Ⅱ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1조의6(양육비 선지급 신청 등)	양육비 채권자는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(이하 “양육비 선지급”이라 한다)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 –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– 제11조에 따른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경우 양육비 선지급의 신청 방법 및 절차, 제5항에 따른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21조의6(양육비 선지급 신청 등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❑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양육비 선지급이 필요한 양육비 채권자 전원에게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함

○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선지급 신청 여부 및 이행관리원의 양육비 선지급 결정 여부 등을 현 상황에서 예측할 수 없으므로 양육비 선지급이 필요한 양육비 채권자 전원을 양육비 선지급 대상으로 가정함

❑ 양육비 선지급 건수는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및 여성가족부의 「2021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」 결과를 참고하여 추정함

❑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개정안 부칙은 규정하고 있으나,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양육비 선지급 신청 등(안 제21조의6)

❑ 개정안은 ‘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’를 폐지하고,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므로 양육비 선지급을 위한 추가재정소요는 양육비 선지급에 필요한 비용에서 현재 실시 중인 ‘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사업’ 예산을 차감하여 산출함

❑ 양육비 선지급 비용은 양육비 선지급 건수를 추산한 후 양육비 선지급 금액을 곱하여 산출함

○ 먼저, 통계청 장래가구추계(2026~2030년)의 추계가구 수에 최근 5년간(2018~2022년) 평균 미성년 자녀 한부모가구 비율 1.76%를 적용하여 장래 미성년 자녀 한부모가구 수(2026~2030년)를 추정

-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른 총 가구 수 대비 미성년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구 수의 2018~2022년 평균 비중은 1.76%임

○ 다음으로 여성가족부의 「2021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」 결과를 참고하여 양육비 채권 발생가능 비율, 양육비 채권 보유비율 등을 적용

- 양육비 채권이 발생하지 않는 사별 등을 제외하고, 양육비 채권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인 이혼·미혼 한부모가족 비율인 88.4%를 적용함
- 이혼·미혼 한부모가족 중 양육비 채권을 소유하고 있는 비율인 21.3%를 적용함 (정기지급 채권 19.9% + 일시·정기지급 채권 0.3% + 일시지급 채권 1.1%)
- 양육비 채권 소유자에 대한 양육비 채무 미지급률인 25.9%를 적용하고, 양육비 선지급 건수는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한 평균 자녀 수인 1.4명을 적용하여 산출함
- 양육비 선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한부모가구의 자녀는 해당연도 내에서는 미성년으로 가정함

[표 2] 양육비 선지급 건수 산출 내역

(단위: 가구, 건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
장래추계가구 수(A)	22,516,347	22,705,521	22,879,575	23,037,240	23,180,129
미성년자녀 한부모가구 수(B) (B=A×1.76%)	396,288	399,617	402,681	405,455	407,970
이혼·미혼 한부모가구 수(C) (C=B×88.4%)	350,318	353,262	355,970	358,423	360,646
양육비 채권소유 가구 수(D) (D=C×21.3%)	74,618	75,245	75,822	76,344	76,818
양육비 채무 미지급 가구 수(E) (E=D×25.9%)	19,326	19,488	19,638	19,773	19,896
양육비 선지급 건수(F) (F=E×1.4명)	27,056	27,284	27,493	27,682	27,854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○ 양육비 선지급 금액은 현행 '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사업'의 월 지급단가인 20만원으로 가정하고, 12개월을 곱하여 연간 양육비 선지급 금액을 산출함[1)]

- 양육비 선지급 대상자의 양육비 채권 금액은 월 20만원 이상으로 가정함

[표 3] 양육비 선지급에 따른 비용: 2026~2030년

(단위: 건, 백만원, 개월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
양육비 선지급 건수(A)	27,056	27,284	27,493	27,682	27,854
양육비 선지급 금액(B)	0.2	0.2	0.2	0.2	0.2
지원 개월(C)	12	12	12	12	12
합계(A×B×C)	64,934	65,482	65,983	66,437	66,85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❑ 현재 실시 중인 '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사업' 예산은 2024년 연간 사업비 16억 100만원이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

○ 여성가족부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사업 예산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16억 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

❑ 양육비 선지급에 필요한 비용에서 현재 실시 중인 '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사업' 예산을 차감하여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함

[표 4]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
양육비 선지급 비용(A)	64,934	65,482	65,983	66,437	66,850
실시 중인 사업 예산(B)	1,601	1,601	1,601	1,601	1,601
계(A−B)	63,333	63,881	64,382	64,836	65,249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1) 정부가 2024년 3월 발표한 「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 방안」에서도 양육비 선지급 월 지급단가를 자녀 1인당 2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음

❑ 참고로, 개정안은 양육비를 선지급한 경우 그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, 현재 실시 중인 '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사업'의 양육비 누적 회수율은 2023년말 기준 15.36%임

○ 선지급한 양육비를 회수하는 경우 재정수입 증가로 인해 정부의 실제 재정부담액은 추계액보다 감소할 수 있으나,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[2)]에 따라 수입과 지출은 상계하지 않음

[표 5]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사업 양육비 회수율

(단위: %)

구분	2019	2020	2021	2022	2023
양육비 회수율(누적)	1.09	5.05	9.29	12.72	15.36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Ⅳ. 부대의견

❑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양육비 선지급이 필요한 양육비 채권자 전원에게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하고, 여성가족부의 「2021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」 결과를 참고하여 선지급 대상자를 추정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양육비 선지급 신청자 및 선정자 수, 양육비 선지급 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
❑ 선지급한 양육비를 회수하는 경우 재정수입 증가로 인해 정부의 실제 재정부담액은 추계액보다 감소할 수 있음

2)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5조(비용추계의 방법 등) ②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재정지출 또는 재정수입의 증감액은 상계하지 아니하고 이를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.

Ⅴ. 작성자

❑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이제정	이진우

❑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제정	02-6788-3739	jejeong2@na.go.kr